

<제13호>

금융투자업자의 (정관 중요사항의 변경)보고서

문서번호 ERUM202606-07

2026. 06. 18.

수 신 : 금융감독원장

참 조 :

사본수신 :

제 목 금융투자업자의 (정관 중요사항의 변경)보고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8조 제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(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)사실을 보고합니다.

- 붙 임 : 1. 상호의 변경 보고
2.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
3. 임원의 선임·해임·사임보고
4.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
5. 금융투자업 일부양수도 보고
6. 금융투자업 일부폐지 보고
7. 지점 등의 신설·폐지 보고
8. 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
9. 본점등의 영업중지·재개보고
10. 자본금 증가 보고
11. 처벌 등 사실 보고
12. 소송 당사자 해당사실 보고
13. 파산신청·해산사유 해당사실 보고
14. 회생절차 개시 관련 보고
15. 국내 사무소의 신설·폐지 보고
16. 어음·수표 부도발생 등 보고(삭제)
17. 해외 점포 보고
18.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관한 보고

주식회사 이룸자산운용 대표이사¹⁾ 이 진 (인)



본점소재지 ²⁾ :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8, 엠타워13층
작 성 자 : 정수지 (주임)
전화번호 :02-3454-1201

주1)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지점·사무소 또는 기타 영업소의 대표자를 기재함

2)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지점·사무소 또는 기타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함

<붙임 2>

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

※ 법 제418조제2호에 따른 정관 중요사항 변경시 작성한다.

1. 정관변경사유

책무구조도 관련 금융당국의 지시사항(책무구조도 도입 및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화)반영

2. 주요 변경내용

제 42조의 2(이사회 의 권한) 제 13호 추가 및 제 42조의3(위원회) 조항 신설

■ 첨부서류

1. 신구조문대비표 및 정관 각 1부
2.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

정관 신구조문대비표

개정전	개정후	개정 사유 (비고)
제 42 조의 2 (이사회의 권한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~ 11. (생략) 12. 기타 관계 법령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거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제 42 조의 2 (이사회의 권한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12. 기타 관계 법령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거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. 책무구조도의 마련 및 변경에 관한 사항 (신설)	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30 조의 3(책무구조도 마련 등) 도입에 따른 이사회 의결 의무 사항 반영
(해당조항 없음)	제 42 조의 3 (위원회) (신설)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1. 내부통제위원회 2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③ 각 위원회의 결의방법에 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 33 조를 준용한다.	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22 조의 2(내부통제위원회) 신설에 따른 이사회 내 법정 의무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

부칙 제 1 조(시행일) 본 정관은 2026 년 06 월 15 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.